

검 토 보 고 서

- 1.서울특별시 마포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총무과**
- 2.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

(2011. 4. 4)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명 금 길]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1년 3월 24일

나.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3. 의안 회부일자

2011년 3월 25일

4. 근거법령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 제1항

법률 제10219호 (2011. 1. 1)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동 조례안은 청사 내 시설물을 구민의 예식, 문화예술, 강연회, 일반행사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구민 편의를 증진하고 이에 따른 사용자의 준수사항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청사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열린 구정을 실현함과 동시에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제출된 것임

〈주요내용〉

- (1) 안 제3조에서는 시설물에 대한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는 대상 시설물을 지정하여 제1항제1호에서 구청사 1층 및 지하1층 로비, 제2호의 2층 대강당과 제3호의 구청사 4층 시청각실, 제4호에서 구청사 12층 강당, 제5호에서는 그 밖의 시설물로 하되 제2항에서는 제1항의 시설물 중 구청사 1층, 지하1층 로비는 문화행사, 전시회 등으로 구청사 12층 강당은 결혼식장의 용도로만 사용하되 사용료는 전액 무료로 함.
- (2) 안 제4조에서는 사용신청 및 허가 대상자를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마포구민, 마포구에 소재하고 있는 단체, 그 밖에 구청장이 사용허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정함
- (3) 안 제5조에서는 사용허가 신청 및 허가를 사용예정일 30일전 부터 1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도록 규정
- (4) 안 제6조에서는 6개호를 열거하여 사용허가 제외대상을 규정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3개호를 열거하여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

- (5) 안 제9조제1항에서는 사용료의 전액이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같은 조제2항에서는 사용료의 부과기준과 사용시간에 대해 별표를 두었음
- (6) 안 제10조제1항에서는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되 같은 조제2항에서는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도록 하였으나 예외적으로 5개 호의 경우를 두어 전부나 일부를 반환하도록 규정
- (7) 안 제12조에서는 사용권리를 구청장의 사전 동의 없이는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사용자가 시설물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
- (8) 안 제15조에서는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음

[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6조(공공시설의 사용료),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및 「지방재정법」 제31조(공공시설에 관한 사용료)에 따라 대강당을 비롯한 시설물에 대하여 예식, 문화·예술행사, 초청 강연회, 문화강좌, 일반행사 등 각종 행사 장소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청사 개방 활용으로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전기료 등 공공요금 절감과 시설물 유·무상 사용에 따른 망실, 훼손 사고 시 배상책임 한계 등 여러 가지 운영상 보완해야 할 사항이 제기됨에 따라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른 효율적인 시설물의 관리와 합리적인 청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회 및 법제심사, 입법예고 등 제반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1년 3월 24일

나.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3. 의안 회부일자

2011년 3월 25일

4. 근거법령

지방자치법 제8조 [법률 제10219호 (2011. 1.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 [대통령령 제22395호 (2011. 1.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동 일부개정 개정조례안은 주민들을 대표해서 주민자치활동을 기획하고 조직해 내는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원활한 순환 위촉으로 적극적인 봉사정신과 투철한 사명감 및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에게 많은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해촉 및 사임위원 재 위촉 시 경과규정을 두어 신규위원 참여의 폭을 넓힘과 동시에 책임감과 자부심을 고취시키고자 제출된 것임

〈개정된 주요내용〉

- (1) 안 제17조제2항제3호에서는 위원으로 사직이나 해촉된 자를 재위촉할 경우에는 사직 또는 해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격을 부여하도록 조항을 신설
- (2) 안 같은 조제7항제1호에서는 위원 및 별도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
- (3) 안 같은 조제7항제2호에서는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위원장을 연임할 수 있고,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 유고시 새로 선출된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도록 규정
- (4) 안 부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경과규정을 두어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또는 별도 고문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 후 연임 위촉되는 경우에는 안 제17조제7항의 개정규정을 적용받도록 함

[검토의견]

○ 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의 위·해촉에 대한 규정을 상세히 명시하여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봉사적 자세의 확립과 투철한 책임감을 함양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개방화와 활성화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우리 구 조례, 규칙심의위원회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특이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다만 위·해촉에 대한 개정 규정으로 인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선도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왔던 현직 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라 해촉 후 이에 상응하는 대체 위원이 없거나 임기만료에 따른 대량 해촉으로 인원이 부족하여 위원회의 구성요건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